



제 1215호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5-	115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 공고 제2015-	127호	공시송달공고	4
○ 공고 제2015-	1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 공고 제2015-	1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6
○ 공고 제2015-	138호	2015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30
○ 공고 제2015-	139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37
○ 공고 제2015-	140호	2014년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산정 공시	40
○ 공고 제2015-	142호	여행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41
○ 공고 제2015-	143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45
○ 공고 제2015-	146호	2015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47
○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	2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56
○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	3호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59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작권말소 예정 공고	60
○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5	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61

고 시

○ 고시 제2015-	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63
-------------	-----	---------------	----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4항 규정[등록취소에 따른 등록증 미반납]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1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1. 19.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5년 1월 19일 ~ 2015년 2월 3일
-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		
2. 당사자	성 명	별지참조	주민등록번호	별지참조
	주 소	별지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에 따른 등록증을 미반납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체납액 525,000원 (오십이만오천원)		
5.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4항, 제51조 제3항 제7호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2484)		

과태료체납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연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1	최원진	540305-*****	인천시 서구 신진말로 **, **	
2	홍승복	561009-*****	인천시 남구 인하로**번길 **, **	
3	장유리	730618-*****	인천시 남동구 담방로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 고 기 간 : 2015. 1. 20. ~ 2015. 2. 5.

◇ 공고의 내용

1. 처분의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1월
2. 대상자 행정처분 현황

연번	등록 번호	성명	상호	사무소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1	3350-7094	김 석	유호엔씨티 공인중개사사무소	남동구 포구로45, 201동 116호(논현동, 유호엔씨티2단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만료일까지 미갱신	업무정지 1월 (2015. 1. 8~ 2015. 2. 7)

3.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및 제39조 제1항 제14호

4.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2-453-2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5-1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남동구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을 위해 발굴·전파한 수범사례들과“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4.6.30.),“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2013.10.14./2014.11.24.)”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타 행동강령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우리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회피 대상을 추가함. (안 제5조1항 제5호에서 제7호)

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인사청탁 금지 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제3항)

다.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본 조항을 신설함. (안 제14조의3)

라. 부패행위 공직자를 성과상여금 최하위에 배치하고, 부패행위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을 공
개함. (안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감사실 : (032)453-2080,
Fax(032)453-20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남동구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홈페이지 : 행정 → 고시/공고 → 입법예고)

5. 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2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을 위해 발굴·전파한 수범사례들과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2014.6.30.),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 (2013.10.14./ 2014.11.24.)”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기타 행동강령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우리구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회피 범위 확대 (안 제5조제1항 제5호에서 제7호)
 - 지연, 학연, 종교, 직연 등 통상적 범위에서 구체적 기준안 마련
- 공직 유관단체 인사 청탁 금지조항 신설 (안 제9조제3항)
 - 공무원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한 유관단체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 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조항 신설 (안 제14조의3)
 -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와 골프, 사행성 오락 금지 및 사전신고
- 부패행위자 규제 조항 신설 (안 제20조제2항, 제3항)
 - 성과상여금 하위순위 배치 및 징계 처분한 내용 공개

□ 본 문 : “별첨1”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2”

□ 참고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자처벌정상화방안이행사례(2014.9.30.)
- 인천광역시공무원행동강령규칙 : 제5조, 제9조, 제14조의3
- 경북포항시공무원행동강령규칙 : 제20조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행동강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5. 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6.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에 처분된 개인비위 징계자(금품·향응수수, 횡령,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등)는 성과 상여금 최하위 순위에 배치 한다.

③ 인사담당 부서장은 징계제도 관련정보와 부패행위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내부적발의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				
신고자	소 속		성 명	
	직급(위)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일 시		장 소		
참석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 용 부 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년 월 일

위 신고인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illegible]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 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 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 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 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 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 ----- ----- ----- ----- ----- ----- -----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 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4. <u>자신의 직계존속·비속과 형제자 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 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u>
<신 설>	5. <u>소속 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 하였던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u>
<신 설>	6. <u>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7.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u><신 설></u>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u>신고받은 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u>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u> <u>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u>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20조(징계 등) ① ----- ----- ----- -----. <u>② 성과평가 대상기간 중에 처분된 개인비위 징계자(금품·향응수수, 횡령, 음주운전, 성관련 비위 등)는 성과상여금 최하위 순위에 배치한다.</u> <u>③ 인사담당 부서장은 징계제도 관련 정보와 부패행위에 의하여 징계가 확정된 징계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단, 내부적발의 경우 직원용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u>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도시관리공단의 유희인력을 불법 주·정차 업무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여 공단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사업 추가(안 제23조)
 -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업무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전화 : 032)453-2063, FAX : 032)453-20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기간 조정(단축) 사유 : 입법 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5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도시관리공단의 유휴인력을 불법 주·정차 업무보조 인력으로 활용하여 공단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사업 추가(안 제23조)
 -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업무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업무 공단 대행 계획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업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15. (생 략) <u>< 신 설 ></u>	제23조(목적사업)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u>16. 불법 주·정차단속 보조업무</u>

[참고자료]

"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공단 대행 계획 통보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공단 대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대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행 정 사 항	해당부서(기관)	비 고
조례개정	교통행정과, 기획예산실	
정관 개정 및 대행 추진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공단	
근무시간 변경(일부) 등에 따른 관계자등 대화 및 이해 협조		
사무실 배치 등 사전준비		
주차단속팀 인원(일반직·시간제·공무직·공익 등) 검토 등	교통행정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 붙임 1.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공단 대행 계획
2. 주차장 관리 요원 인원 조정 계획.xls 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수신자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교통행정과장,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주무관

혁신담당

혁신전략추진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2015. 1. 19.

협조자 ★건설교통국
장

시행 기획예산실-877

접수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

전화번호 032-453-5682

팩스번호 032-453-5689

/ hkihun@korea.kr

/ 비공개(5)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남동구가 「정부3.0」을 선도하겠습니다.

2015. 1. 15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공단 대행 계획



혁신전략추진단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공단 대행 계획

□ 대행일시 : 2015년 3월중

□ 대행업무 :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 사전준비사항

① 조례, 정관 등 개정

② 근무시간 변경(일부) 등에 따른 관계자 등 대화 및 이해 협조

□ 주요 조정 사항

○ 공단 시설관리직(주차장 관리요원) : 45명 → 29명 (16명 감축)

※ 잉여인원 배치 : 주정차단속 보조업무 12명, 견인업무 등 4명

○ 주정차단속 업무 보조 인원(12명)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사회복무요원 활용 검토

○ 구 주차단속팀(6명) 공단 배치 및 근무인원 재검토

○ 단속 공무원(15명) 공단 배치(일반직 1명, 시간선택제임기직 14명)

○ 시간선택제임기직 14명은 계약종료 후 일반직공무원 배치

○ 단속방법 : 3인 1조 단속 → 2~3인 1조 단속

○ 근무조 유연성 있게 편성

• 9시 ~ 18시 근무를 원칙

• 오전·오후조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

○ 주차단속팀 공무원(상담원) 5명 재배치 : CCTV단속 3~4명

※ 공무원 민원상담을 가능한 공무원으로 대체

○ 무료개방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공단 대행 계획

1. 개요

가. 관련규정

- 1) 지방공기업법
- 2)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대행업무 :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다. 대행일시 : 2015년 3월중

라. 주요내용

- 1) 주정차단속 보조업무 공단 대행 추진
 - 2) 공단 시설관리직(주차장 관리요원) 잉여 인원 활용
 - 3) 구 주차단속팀 및 단속공무원 공단 배치(근무인원 재검토)
 - 4) 단속방법 변경 : 3인 1조 단속 → 2~3인 1조 단속
 - 5) 근무조 유연성 있게 편성(9~18시 근무 원칙)
 - 6) 주차단속팀 공무원(상담원) 5명 재배치 : CCTV단속 3~4명
- ※ 공무원 민원상담을 가능한 공무원으로 대체

2. 업무대행에 따른 사전 준비상황

- 가. 관련 조례등 개정 2015. 1월 중
 ※ 남동구의회 상정 : 2015. 2월 임시회 / 개정조례안 작성
- 나. 업무이관 협의 등 2015. 1월 중
- 다. 도시관리공단 정관개정 요구 2015. 2월 중
- 라. 대행계약 체결 2015. 3월 중
- 마. 사무실 구성 등 2015. 3월 중
- 1) 사무실 배치 : 도시관리공단 내
 - 2) 행정망(LAN 등) 및 행정장비 등 설치

3. 주정차단속 보조 인원 확보 방안

가. 필요 인원 : 12명

[단위:명]

구 분	합 계	구 단속공무원		단속 보조(공단)	비 고
		공 무 원	시간제	시설관리직	
2인1조	23	1	14	8	
2인1조(오전) 3인1조(오후)	27	1	14	12	
3인1조	31	1	14	16	

나. 인원 확보 방안

- 1) 무료 개방 가능한 주차장 : 무료화 또는 활용방안 마련
- 2) 인원 절감 가능 주차장 : 인원 조정

다. 공단 시설관리직(주차장 관리요원) 인원 조정

[단위:명]

현원	인원 조정			조정후	비 고
	소계	무료화 (4개소)	인원조정		
45	-16	-11	-5	29	잉여인원 16명

* 주차장수 : 21개소 → 17개소

* 무료개방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 필요

라. 잉여 인원 활용방안

[단위:명]

구 분	합 계	주정차단속 보조	견인 업무 등	비 고
인원수	16	12	4	

4. 대행 전·후 비교

가. 업무대행 전(前)

- 1) 운영주체 : 남동구(교통행정과)
- 2) 근무장소 : 남동구청

3) 인원구성

[단위:명]

구 분	합 계	공 무 원	시간제	기간제	비 고
계	45	1	14	30	
3인1조(오전)	18		6	12	3개조/격일
3인1조(오후)	24		8	16	4개조/격일
3인1조(전일)	3	1		2	1개조/주중

나. 업무대행 후(後)

1) 운영주체

가) 주정차단속 총괄 : 남동구(교통행정과)

나) 주정차단속 보조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 근무장소 :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내

※ 구 주차단속팀 일괄 이전하되, 장소여건에 따라 이전 규모 조정

3) 인원구성

[단위:명]

구 분	합 계	구 단속공무원		단속 보조(공단)	비고
		공 무 원	시간제	시설관리직	
계	27	1	14	12	
2인1조(전일)	2	1		1	1개조
2인1조(오전)	9		6	3	3개조
3인1조(오후)	16		8	8	4개조

※ 업무 대행 후 조편성 변경 필요(전일근무 원칙, 필요시 오전·오후조 편성)

5. 인건비 증감 비교

[2014년 기준 / 명,천원]

구 분	기간제근로자			공단 시설관리직		
	인원	1인 평균 (연간)	소요 인건비	인원	1인 평균 (연간)	소요 인건비
대 행 전	30	11,766	352,980			
대 행 후				12	31,695	380,340

※ 주차장 잉여인원 활용하여 주정차단속 보조 및 견인업무 등 인원 수급

→ 공단 인원 변동 없음

6. CCTV 직원배치 계획(안)

가. 기간제 근로자(3명) 미채용

나. 공무원 업무 조정

구 분	합 계	민원 상담	CCTV 단속	비 고
조 정 전	5	5		
조 정 후	5	1~2	3~4	

※ 공무원 민원상담을 가능한 공무원으로 대체

7. 업무 대행 후 조치사항

가. 주정차단속 보조 인원(12명) 퇴직 등 결원 발생시 사회복지요원 활용 검토

나. 시간선택제임기직 14명은 계약종료 후 일반직공무원 배치

8. 행정사항

가. 조례 개정 교통행정과, 기획예산실

나. 정관 개정 및 대행 추진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공단

다. 근무시간 변경(일부) 등에 따른 관계자 등 대화 및 이해 협조

.....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공단

라. 사무실 배치 등 사전준비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공단

마. 주차단속팀 인원(일반직·시간제·공무직·공익 등) 검토 등

..... 교통행정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 창조경제의 시작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신 기획예산실장

(경유)

제목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1. 기획예산실-877(2015.1.19.)호와 관련됩니다.
2.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공단 대행 계획」에 따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가.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도시관리공단 대행을 위한 근거 마련

나.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목적사업)에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업무 추가. 끝.

교 통 행 정 과 장

주차단속담당 교통행정과장 전결 2015. 1. 19.

협조자

시행 교통행정과-1351 (2015. 1. 19.) 접수 기획예산실-941 (2015. 1. 19.)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http://www.namdong.go.kr>

전화번호 032-453-2891 팩스번호 032-453-2889 / syoung1013@korea.kr / 비공개(5)

개방·공유·소통·협력으로 남동구가 「정부3.0」을 선도하겠습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5-138호

2015년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관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습동아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학습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평생학습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수학습동아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신청자격**

- 남동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회원 10명 이상의 성인학습동아리
-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월1회 이상)을 하며 주활동 장소가 남동구인 동아리 (지원사업 신청과 관계없이 홈페이지 학습동아리 신청은 수시로 가능)

※ 사업 제외대상

-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모임이 아닌 강좌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
- 정규교과과정학교(대학교포함) 소속의 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 회원 중 남동구민의 비율이 50%미만인 동아리
- 영리목적,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하는 동아리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를 받는 동아리
- 강사가 주체가 되어 일정 강사료를 받고 운영하는 동아리
- 일회성 행사, 여행성 사업

2. 지원내용

- 총사업비 : 5,000천원(동아리별 5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학습활동 과정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 학습동아리 학습활동·발표에 소요되는 인쇄비, 재료비
- 지역사회 환원(자원활동, 평생학습관련 행사)을 위한 활동비

※ 사업비 지원 제외항목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수경비만 지원하며 기념품·시상금등의

경비와 단체의 경상적 경비는 원칙적으로 제외

(식사비,교통비,주차비,회의참석비,계좌이체 수수료,사무기기 구입비 등)

3.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동아리 회칙 및 활동 증빙자료 1부
(각종 대회, 발표회 등 참여관련 서류 및 활동사진 등)
- ※ 남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http://LLL.namdon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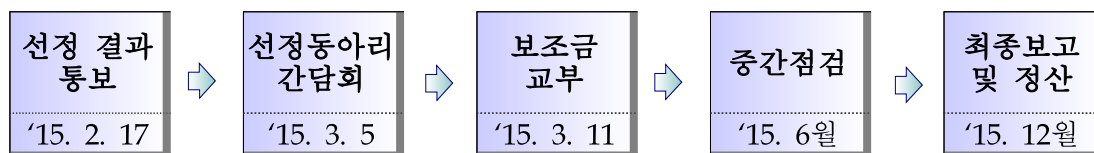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15. 1. 21(수) ~ 2. 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등기 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 ※ 동아리 신청 후,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jishon7702@korea.kr)
- 접 수 처 : [405-702] 인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남동구청 6층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5. 심의 및 선정결과 통보

- 심사방법 : 서류 요건 심사(1차), 심의위원회 개최(2차)
- 선정기준
 - 동아리 현황 : 회원의 참여도 및 최근활동 실적 등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참신성, 적합성, 실행가능성, 효과성 등
 - 사업예산 :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부담비율의 적정성 등
- ※ 남동구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료 동아리 및 지역사회 환원 계획이 있는 동아리를 우선 선정하며 활동분야별 특성에 따라 안배하여 선정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및 남동구 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6. 추진 일정



7. 기 타

- 보조 사업에 있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동아리의 지원금 환수
- 지원금 교부 학습동아리는 남동구의 학습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필수 참석

8. 문 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453-6050

【붙임2】

2015 평생학습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사업 계획서**1. 사업 개요**

사 업 명			
동아리명			
사업목적			
사업배경			
사업기간	2015. . . ~ 2015. . .		
시 간	총 ()회/ 총 ()시간/		
장 소			
사업대상		회 원 수	총()명
총 사업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2. 프로그램 세부계획

차시	주제	주요 내용	강사명	참여 인원(명)	비고
1차 (월 일)					
2차 (월 일)					
3차 (월 일)					
4차 (월 일)					
5차 (월 일)					
...	빈칸 부족시 추가하여 작성				

3. 자원활동 계획

차시	주제	주요 내용	강사명	참여 인원(명)	비고
1차 (월 일)					
2차 (월 일)					
3차 (월 일)					
4차 (월 일)					
5차 (월 일)					
...	빈칸 부족시 추가하여 작성				

4. 보조금 지출 계획서

지출항목	총 사업비 (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강사비				시간당단가*수업횟수= 총금액	
교재비 (자료집 제작, 교재구입비 등)				1권단가*수강생수 = 총금액	
실습비 (교육재료비 등)				1개단가*수강생수 =총금액	
홍보비 (플래카드, 리플릿 제작 등)				1개단가*수량 =총금액	
운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등)					

5. 동아리 회원 명부

연번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핸드폰	이메일	비고
1						대표
2						총무
3						
4						
5						
6						
7						
8						
9						
10						
11						
...	빈칸 부족시 추가하여 작성					

6. 기대효과 (동아리지원사업 운영 시 기대되는 효과 및 향후 운영계획 작성)

-
-

7. 사업성과 관리계획 (출결관리, 만족도 조사 실시, 각종 활동 참여 계획 등)

-
-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39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4. 1. 22. ~ 2014. 2. 10.(20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등록 취소 처분
3. 당 사 자

회 사 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비 고
케이 다이아몬드	강현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10번길46 (고잔동)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 제조시설 멸실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등록취소
6.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51의 2(청문)
7.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14. 2. 25.(수) 14:00 ~ 18: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7층)
 - 주 재 자 :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박광철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남동구 기업지원과 산업지원팀(☎032-452-2692)

8.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 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 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 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 기관(남동구청 기업지원과)으로 문의(032-453-2692)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5-140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의 고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명단 작성비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 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 복사용지(A4 1매당) : <u>70원</u> ○ 라벨용지(A4 1매당) : <u>190원</u>	○ CD : (<u>500원</u> × CD개수) + (<u>25원</u> × 면수)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42호

여행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의 규정을 위반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께서는 청문실시일에 참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문일에 불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35조(청문의 종결)에 의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취소)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1. 위반사항 : 『관광진흥법』 제8조 제7항(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휴·폐업 사실 미통보 2차
2. 처분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3. 공고기간 : 2015.1.22.(목) ~ 2015.2.5.(목) (15일간)
4. 청문일시 : 2015.2.6.(금) 09:00 ~ 18:00
5.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6층 문화체육과
6. 등록취소 행정처분 예정 일자 : 2015.2.10.(화)
7.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8. 대상업소

연 번	업종	등록 번호	상호	대표자	소재지	예정처분
1	국외	2008-4	(주)내일여행사	김형*	남동구 예술로 206, A동 102호(구월동,구월중앙프라자)	등록취소
2	국외	2007-3	(주)미담항공 여행사	김형*	남동구 구월남로163 (구월동,토성프라자302호)	등록취소
3	국내	2003-5	(주)산내들 관광여행사	(주)산내들 관광여행사	남동구 인주대로747 (구월동)	등록취소
4	국내 국외	2005-3 2005-8	(주)신영 나드리투어	김세*	남동구 인주대로614번길1 (구월동)	등록취소
5	국내	2010-7	(주)월인천강	손상*	남동구 백범로399, 1204호 (간석동,아트폴리스)	등록취소
6	국외	2000-7	(주)인천 자유여행사	문지*	남동구 남동대로745 (구월동,연수빌딩)	등록취소
7	국외	1999-2	(주)자기여행 사	정한*	남동구 백범로457, 411호 (간석동,성우네오빌)	등록취소

8	국외	2005-6	(주)제이에스 서울항공 여행사	김중*	남동구 인하로507번길74 (구월동,유진빌딩 6층)	등록취소
9	국내	2007-6	(주)투어센스 네트워크	최미*	남동구 정각로 16 (구월동,한국전기공사협회 2층)	등록취소
	국외	2007-5				
10	국내	2010-8	(주)푸른교육 여행	이풍*	남동구 인주대로774 (구월동)	등록취소
	국외	2010-7				
11	국내	2009-4	(주)한국투어	김한*	남동구 동암남로26번길39 (간석동,디토폴리스 301호)	등록취소
	국외	2009-6				
12	국외	2005-2	(주)한앤한투 어	서경*	남동구 예술로138, 921호 (구월동,이토타워)	등록취소
13	국내	2014-1	와이제이 드림투어	주지*	남동구 백범로 399, 1407호 (간석동, 아트폴리스)	등록취소
14	국내	2004-2	채팬코리아	박찬*	남동구 미래로21, 1102호 (구월동,노빌리안2차)	등록취소
15	국내	2000-1	주식회사 뉴동남	주식회사뉴 동남	남동구 경인로587 (간석동,201호)	등록취소
16	국내	1997-1	주식회사 뉴월드여행사	주식회사뉴 월드여행사	남동구 미래로45, 505호 (구월동,벤처빌딩)	등록취소
	국외	1996-2				
17	국외	1997-2	주식회사 에이스항공 여행사	주식회사에 이스항공여 행사	남동구 소래로 640 (만수동,호성빌딩 4층)	등록취소
18	국내	1996-2	주식회사 인우관광 여행사	주식회사인 우관광여행 사	남동구 구월남로280 (구월동,2층)	등록취소
19	국외	2006-2	주식회사 정인	주식회사정 인	남동구 소래로695-1 (만수동)	등록취소
20	국내	1998-1	주식회사 코리아관광	주식회사코 리아관광	남동구 경인로644번길 1 (간석동)	등록취소
21	국내	2010-3	주주 인더스트리	이주*	남동구 남동대로712번길5-24, 406호 (구월동,구월빌딩)	등록취소
	국외	2010-3				
22	일반	2011-1	초승 국제여행사	김혜*	남동구 문화서로65번길28-19 (구월동,1층)	등록취소
23	국내	2010-9	티엔지코리아 (주)	임형*	남동구 석산로159, 507호 (간석동,보인프라자)	등록취소
	국외	2010-8				
24	국외	2006-3	하우젠여행사	유재*	남동구 예술로192번길39 (구월동,우신빌딩 503호)	등록취소
25	국내	2003-6	키즈투어넷	김수*	남동구 미래로21, 1306호 (구월동,노빌리안2차)	등록취소

※ 본 공고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032-453-2144)
(FAX 032-453-2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제기하실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제기는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청문 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시행 기관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032-453-21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43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인신조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공인 신조 및 폐기사유
 - 자동인증기 신규도입에 따른 신조 및 폐기
- 공인의 최초사용일(공인폐기일) : 2015. 01. 22
- 신조 및 폐기 공인 수 : 신조(1개), 폐기(1개)

○ 신조 및 폐기 공인명

등 록			폐 기		
공 인 명	인 영	서체및규격(cm) (서체)	공인명	인 영	서체및규격(cm) (서체)
인천광역시남동 구청장인(자동차 관리과민원전용)		2.4×2.4 (한글전서체)	인천광역시남동 구청장인(자동차 관리과민원전용)		2.4×2.4 (한글전서체)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5-146호

2015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관내 평생교육기관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구민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고 남동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와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5년 1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응모(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평생교육기관 (영리법인, 행정기관 제외)

2. 지원대상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15. 3월 ~ 12월
- 사업대상 및 지역 : 남동구민 및 남동구내 프로그램 운영에 한함
- 공모분야 : 3개분야 (주민참여확대, 직업능력개발, 지역사회통합)

사업분야	프로그램 내용
주민참여확대	• 인천 및 남동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 지역사회 참여 및 평생교육 자원활동 프로그램 • 주민의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며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 자격증 취득, 경력 개발 등 직업·기술 전문교육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준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개인의 진로와 직업선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통합	• 사회적 배려 대상자(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프로그램

※ 제외대상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기관(단체)의 총회, 행사 등 운영비 성격의 내부 사업
- 프로그램 수혜자의 학자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 지원 사업
- 일회성 프로그램 (유명인사의 특강 등), 여행성 사업
-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프로그램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총 10개 내외 사업 지원)
- 지원범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직접 경비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재료비 등)
 - 성과발표회 참가, 자원활동에 필요한 경비
- ※ 자산취득, 시설비, 기관운영비, 식대 등 업무추진비는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자부담(대응투자) 비율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지원액은 신청액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1기관 1개 프로그램 지원

4.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작성파일 별도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중 1부
- 최초 신청기관의 경우 사업추진 관련 증빙 실적 첨부
- ※ 서식은 구 홈페이지(새소식), 평생학습관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5. 1. 22(목) ~ 2. 2(월) (평일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제출 후 이메일 별도 전송/ jishon7702@korea.kr)
- 접수장소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6층) ☎453-6050

6. 심의 및 통보

- 심의방법 : 평생교육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기준 : 프로그램의 타당성 및 실효성, 독창성 및 공익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수혜범위와 프로그램 운영수행 능력,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7. 보조금 교부, 사업 평가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지원 결정 금액에 근거 사업실행 계획서 첨부 제출
- 보조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 평가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평가 실시
 - 제출시기 :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 정산 결과 부적정 집행 보조금 환수 조치

8. 지원사업 일정

- 선정 결과 통보 : 2015. 2. 17 예정
- 지원기관 실무자 간담회 : 2015. 3. 5
- 보조금 교부 : 2015. 3월중
- 프로그램 운영 : 2015. 3월 ~ 12월
- 최종 보고 및 정산 : 2015. 12월

9. 기타

- 기관의 자체 사정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신청서의 계획과 실제 내용 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선정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업 선정에 따른 제반 사항은 남동구가 정한 기준 및 규정에 의함

10. 문의 : 남동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 (☎ 453-6050)

【붙임1】

2015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

기 관 명					
사업(프로그램)명					
공모분야 (해당번호에 V표시)		☐ 주민참여확대 ☐ 직업능력개발 ☐ 지역사회통합			
총 사 업 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법인(단체) 등록사항		등록명, 등록번호		대표자	
신청 사업 내용		○ ○ ○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대표전화	☎(032)		팩 스	
	실무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2015년도 남동구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명

직인

- 붙임 1. 기관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남동구청장 귀하

기 관 (단 체) 소 개 서

[○○○ 기관(단체)명]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	
	○ 전 화 : ○ FAX : ○ 인터넷 홈페이지 :	○ 지원사업담당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00.00.00 ○○○ 창립 ○ '00.00.00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명	○ 직원수 : 명 ○ 평생교육사수 : 명
기구현황	※ 작성예시 <pre> graph TD A[이사장] --> B[상임이사] B --> C[사무국장] B --> D[지역본부] C --> E[총무] C --> F[기 획] C --> G[모 니 터] C --> H[홍 보] </pre>	
2015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2015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평생교육 사업을 간략히 기재 ○ ○	

【붙임2】

2015년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공모분야 :

3. 사업목적

4. 사업(프로그램) 운영계획

☐ 사업의 필요성☐ 프로그램 내용☐ 운영체계 및 전략

- 사업운영 전담인력, 강사 구성
- 학습자(회원) 관리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 학습자 모집 계획, 홍보전략 등

☐ 사업대상 및 인원 : 장애아동 및 가족 15명☐ 사업추진 기간

2015년 월 일 ~ 월 일 [프로그램운영시간 : 총 시간]

☐ 프로그램 운영일정

회차	일 정	장소	세부 추진 내용	비고
1	월 일		◦	
2			◦	
3				
4				
5				
6				

5. 사업예산 집행계획

◦ 사업비 구성현황

계(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비 고
원	원(%)	원(%)	

※ 자부담 비율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되어야 함

◦ 사업비 집행계획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세부적으로 기재)
	계	보조금	자부담	
계				
강 사 료				○ ○
홍 보 비				○ ○
교 재 비				○ ○
재 료 비				
기타 운영비				

※ 보조금 심의시 보조금액이 조정될 경우, 자체부담으로 충당이 가능하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

6.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등

기 관 명	대표자	부담금액	부담방법	비 고
		원	◦ 참여자 부담금 등 (수강료, 교재 등) 상세하게 기재	

7. 기대효과

◦

사업비 예산 편성 작성 지침

- ①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 ②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③ 보조금은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 ※ 사업비 지원 제외 항목
 - 사무실운영경비, 자산취득경비, 업무추진경비, 행사부대경비 등 제외
 - 사무실운영 경비: 소속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 자산취득경비 :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경비 : 급식비, 간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시상금 등
 -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④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불가
- ⑤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⑥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공통기준)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강사료	전문강사	1.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2. 유명예술인,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3.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4. 판검사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5.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6. 시 의원 7. 3급 이상 공무원 8.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 2년이상 실무경력자 9. 기타 원장이 전문강사로 인정하는 자	기본 200천원 초과 80천원	소속직원 지급불가
	일반강사(가)	1.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2. 4급, 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3. 외국어 원어민 강사 4. 일반 컨설턴트(2년이상 실무경력자) 5.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5년이하 내원 출강강사 6. 특별·전문 강사 이외의 외래강사	기본 150천원 초과 60천원	
	일반강사(나)	1. 5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및 전산 등 학원강사 3.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	기본 100천원 초과 50천원	
	보조강사	1. 단순하게 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실기·실습교육 보조 등)	기본 50천원 초과 30천원	
교재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	실비	
재료비		• 소모성 재료 구입비	실비	
홍보비		• 현수막 (가로 450cm×세로 90cm 기준) • 홍보 전단 등 인쇄비	50천원 (규격에 따라 초과가능)	
행사비		• 차량임차료, 입장료 등	실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해 편성·집행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5-2호

공인 신조 ·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공인 신조 사유
 - 지방재정법(2014.11.29.시행)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 변경
- 공인의 최초사용일(공인폐기일) : 2015. 1. 16
- 신조 · 폐기 공인 수 : 신조(2개),폐기(2개)

○ 신조공인명

○ 의회사무국 신조 공인 목록 (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재무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부채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공인명

○ 의회사무국 폐기 공인 목록 (2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폐 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채무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 × 2.0cm	

※ 공고된 공인의 규격은 실물이 아니므로 실제규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공고 제2015-3호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5년 2월 5일 (목) 11 : 00

■ 장 소 : 남동구의회 본회의장 (3층)

2015년 1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의 회 의 장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 2015-8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5. 01. 30.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15. 01. 20. ~ 2015. 01. 29. (10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2011 0199286	보노 샤브샤브	박*을	구월남로 182, 3층(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14.08.27.	2015.01.30.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5. 01. 29.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453-2623

2015. 01.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15-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01.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2. 공고기간 : 2015. 01. 22 ~ 2015. 02. 06 (15일간)
3. 당 사 자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주	소 재 지	비고
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62	미림농산	김*인	남동구 구수골로 64 (수산동)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사 유 : 시설물 멸실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7.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032-453-2754)
 - 청문일시 : 2015. 02. 13. (금)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청사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재자 :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기 타 :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4)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유통식품팀 032-453-2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 2015-10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1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1. 사 업 명**

○ 호반베르디움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명 : 호반티에스(주) (대표자:정성기)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87, 서동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9블록

○ 연 면 적 : 92,654.96㎡

○ 사업규모 : 공동주택 아파트/부대·복리시설

지하1층, 지상25층, 8개동, 아파트 600세대

○ 사 업 비 : 186,547,088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 2015. 5. 1. ~ 2017. 7. 31.**5. 주택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79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보입니다.